

2026 세제개편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TAX

1 반도체 호조를 넘어 집재성장을 반대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
-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2 서민·중산층, 청년등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지방주도성장 강화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개편
- 비과세·감면 정비

4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세제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1 | 잠재성장을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지원분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 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로봇 부품
요건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 x 기준공제액(지방은 11~15배 우대)					

2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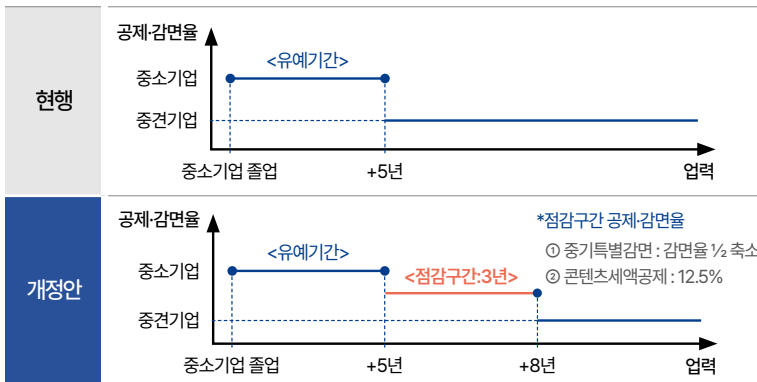
- 미래형 에너지 예시 :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일반기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2~25%	30~50%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도입대상)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②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업력요건	벤처기업 설립 후 7년 → 10년 이내
출자세액공제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공제 5% → 7%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일반 ISA 정보	생산적 ISA 신설	
		일반형	청년형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등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3년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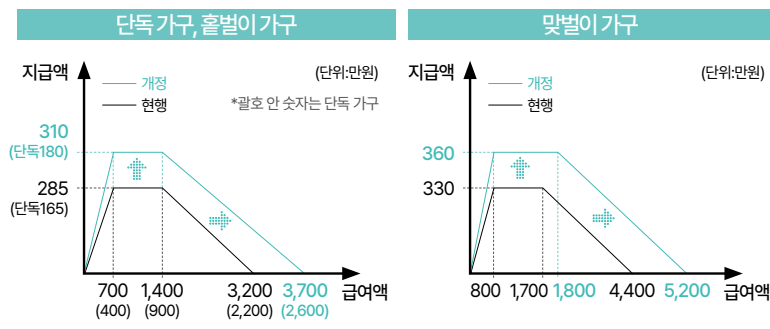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BDC 투자 배당소득 세율
14%	9% 저율 분리과세 (납입금 1억원 한도)

2 | 민생·지방지원

서민·중산층 지원

1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2 월세세액공제 공제 한도 확대

현행	개정안
연간 공제대상 월세 한도 1,000만원	1,200만원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

현행		개정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00만원 750만원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1 청년 세제지원 확대

	일반	청년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17%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공제율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15%
생산적금융 ISA	이자배당 전액비과세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추가

2 혼인·출산 지원

	현행	개정
주택 임차차임금 상환액 소득공제	 본인 임차거주 +  배우자 임차거주 → 1명만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부부 각각 소득공제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	 본인 소유  혼인  배우자 소유 → 유류세 환급 불가	세대별 경차 1대분은 유류세 환급 적용
근로자 출산지원금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

지방주도성장 강화

1 R&D 및 투자 세제지원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사업장 소재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Ⅰ지역	5년간 90%	5년 90%	3년간 70%	3년 70%
Ⅱ지역		6년 90%		3년 75%
Ⅲ 지역		7년 90%		3년 80%
Ⅳ 지역		10년 90%		3년 90%

2026 세제개편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3 |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부동산 세제 합리화

1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非조정지역)		
'27년	'28년	'29년 ~	'27년	'28년	'29년 ~
거주 4%/연 보유 4%/연	거주 6%/연 보유 2%/연	거주 8%/연	보유 2%/연	거주 2%/연 or 보유 1%/연	거주 2%/연
10년, 최대 80%			15년, 최대 30%	15년, 최대 15% ^{보유} or 30% ^{거주}	15년, 최대 30%
공제한도 없음	20억원	10억원	공제한도 없음	20억원	10억원

2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조정

구분	현행	개정
거주용 1주택	12억원	14억원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비거주 1주택		9억원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그 외	9억원	4억원 + (5억원 x $\frac{\text{거주용 주택가액}}{\text{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합계 9억원(시가 약 13억원)까지는 과세 제외]

3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구분	현행	27년	28년 ~
1세대 1주택자, 지방 1주택·2주택자	60%	70%	(좌 동)
3주택자 등*		70%	80%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는 제외)

4 [종합부동산세] '주택수기준'에서 '주택가액기준'으로 서울 체계 단계적 일원화

과세표준	현행		'27년		'28년 ~
	1·2주택	3주택이상	1·2주택	3주택이상	모든 주택
~3억원	0.5%		(좌 동)		(좌 동)
3~6억원	0.7%				
6~12억원	1.0%		1.3%		
12~25억원	1.3%	2.0%	1.5%	2.0%	2.0%
25~50억원	1.5%	3.0%	2.0%	3.0%	3.0%
50~94억원	2.0%	4.0%	2.7%	4.0%	4.0%
94억원 초과	2.7%	5.0%	3.5%	5.0%	5.0%

5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

공제율 (한도80%)	현행		'27년		'28년 ~	
	연령별 공제	60세~ 20% 65세~ 30% 70세~ 40%	연령별 공제	60세~ 20% 65세~ 30% 70세~ 40%	연령별 공제	60세~ 20% 65세~ 30% 70세~ 40%
	보유 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보유/거주 공제 중선택	5년~ 10/20% 10년~ 20/40% 15년~ 25/50%	거주 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금액한도	한도 없음	800만원		600만원	

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현행	개정안
직전연도의 150%	200%

7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현행	① 1세대 1주택자, ②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③ 중부세액 100만원 초과, ④ 총급여 7천만원
개정안	1. ①~③ (현행 동일) + ⑤ 총급여 8천만원 2. ①+②+⑤ 세부담이 큰 고령자(65세 이상)의 거주용(10년 이상) 주택

8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확대

현행	개정안
연 250만원	연 2,500만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9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구분	현행	'27년	'28년	'29년
2주택자	기본세율 ^(6~45%) + 20%p	+5%p	+10%p	+20%p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6~45%) + 30%p	+10%p	+15%p	+30%p

10 [양도소득세]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수도권 5년 이상 거주	 처분·이주시 '27년 50%(5억원 한도), '28년 30%(3억원 한도) 감면	 비수도권
---	---	--

기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

1 기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 정의 신설	'기업':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적용대상 업종정비	·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 선정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
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 → 개정안 30년
심사위원회	기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

2 기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조정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 3~7배 → 2~3배)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000만원/㎡) 신설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20억원, 최대공제 한도 600 → 1,000억원으로 상향

3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매도자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 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

비과세·감면 정비

* 전체 241건 중 115건

종료 (20건)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 등
재정지원전환 (17건)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 (예)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
재설계 (64건)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 (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액 VAT 세액공제 개선 등
상시화 (14건)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4 |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세제합리화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주가누르기 추정요건	위원회 심의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최소 30% 할증평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에 해당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확정	평가기간 확장 (현행 4개월 → 개정안 최대 6년 6개월)

조세탈루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1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현행		개정안	
추징세액	지급률	추징세액	지급률
5천만원(^{관세} 2천만원)~5억원	20%	3천만원(^{관세} 1천만원)~5억원	30%
5억원~20억원	15%	5억원~20억원	20%
20억원~30억원	10%	20억원 ~	10%
30억원 ~	5%		

2 기한 후 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

가산세 감면	현행	개정안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50%	7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